

'18. 6.27.(수)	화재예방과장 이윤근 7440 / 010-9178-5335
홍보여부	×

소방정책국장 *신영우*.

차 장
<i>이재홍</i>

---

## 화재안전특별조사 인건비 등 지급 세부지침

---



소 방 청  
National Fire Agency 

# 화재안전특별조사 인건비 등 지급 세부지침

## □ 관련근거

- 2018년 제17회 국무회의 의결('18.4.17.) 「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계획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」
- 화재예방과-2318('18.4.19.) 「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공고 의뢰」
- 화재예방과-3364('18.6.7.) 「화재안전특별조사 참여인력 교육운영 계획」

## □ 지급기준 (2018년)

### ○ 지급액

(단위 : 원)

구 분	통상임금(월)			명절휴가비 (1회/9월)	출장여비 (1일)	시간외 근무
	합 계	기본급	정액급식비			
경력직 (전기, 가스, 소방)	3,123,000	<b>2,993,000</b>	130,000	600,000	관외 3만원 관내 1만원	- 월 20시간 이내 - 시간당 지급액 <sup>3)</sup> * 경력직 22,410원 * 청년인력 12,230원 ※ 특근매식비 1일 6,000원 월 10회 이내 재직자 이외 지급
청년 인력	1,705,000	<b>1,575,000</b>	130,000	600,000	(관용차량 이용) * 공무원출장여비 지급기준 준용	
인력	1,705,000	<b>1,575,000</b>	130,000	600,000		

- 1) 청년인력 기본급은 채용공고 시에 1,570,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,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정한 월 최저 임금(1,573,770원) 보다 낮아, **1,575,000원**으로 5,000원 인상
- 2) 경력직은 채용공고 시의 기본급 적용(예산산출 기초금액 2,933,000원 대비 60,000원 상승)  
\* 예산신청 시 1개월 20일로 산정,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월급산정 기준 22일 고려, 일부 조정
- 3)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= 통상임금(기본급 + 정액급식비) ÷ 209시간 × 1.5  
\* 산정근거 : 2018년도 소방청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기준
- 4) 4대 보험은 보험료 지급기준에 따라 시도에서 집행(지급기준일은 계약체결일 / 지방비로 예산 편성)

### ○ 지급액산정 : 고용계약 체결일(교육개시일) 부터 산정

구 분	경력직 (전기, 가스, 소방)	조사보조인력		행정보조인력
		평일교육반	주말교육반	
계약체결일(교육개시일)	2018. 7. 2.	2018. 6. 11	2018. 6. 9.	2018. 7. 2.

### ○ 지급주체

- 교육기간 중(교육개시일 ~ 7.8) : 소방청 지급
- 조사개시일(7.9) 이후 : 시도별 지급

## □ 교육기간 중 급여지급

○ 관련근거 : 「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」 제30조 제2항

“기간제 근로자의 .....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 중의 보수는 소방청장이 지급한다.”

○ 지급기준 : 통상임금 중 기본급 지급 원칙

\* 교육기간 중 숙식제공 시에는 정액급식비 미지급, 미제공기간(현장실습기간)에는 지급

○ 지급방법 : 월급제 지급

- 월의 도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 
일할계산 지급 ('18.6.22.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질의회신)

### 1) 청년보조인력 평일반 교육기간 급여 지급액 : 1,490,000원

\* 교육기간 : 6. 11 ~ 7. 8. (4주 / 3주 합숙교육, 1주 현장실습교육)

6월 (6.11~30)	일할계산액 = 월급액 / 역일수 × 1월 미만의 근무기간 (1,050,000원) (1,575,000원) (30일) (20일)
	※ 6월 3주 합숙교육기간의 경우, 숙식 제공으로 정액급식비 미지급(1일 52,500원)
7월 (7.1~8)	일할계산액 = 월급액 / 역일수 × 1월 미만의 근무기간 (440,000원) (1,705,000원) (31일) (8일)
	※ 7월 1주 현장실습기간 숙식 미제공으로 정액급식비(130,000원) 지급 ☞ 시도에서는 7월 월급액의 잔여액인 1,265,000원 지급 (23일분)

### 2) 청년보조인력 주말반 교육기간 급여 지급액 : 1,198,890원

• 교육기간 : 6. 9 ~ 7. 8 (기간 중 토·일 8일 합숙교육 / 1주 평일 현장실습교육)

• 산정기준 : 6월 시급 7,536원 기준 (= 1,575,000원 ÷ 209시간)

\* 토요일(유급휴무일) : 8시간 이후 시간만 연장근무 수당 지급(0.5배)

\* 일요일 : 8시간 휴일수당 지급(0.5배) + 이후 시간 연장근무수당 추가가산(0.5배)

• 교육시간(토·일 동일) : 09:00 ~ 21:00 (10시간 교육 / 점심 및 저녁시간 2시간 제외)

6월 (6.9~7.1) 토·일 8일	토요일 : 82,896원 = (8시간 × <sup>시간급의 1배</sup> 7,536원) + (2시간 × <sup>시간급의 1.5배</sup> 11,304원)
	일요일 : 120,576원 = (8시간 × <sup>시간급의 1.5배</sup> 11,304원) + (2시간 × <sup>시간급의 2배</sup> 15,072원)
	6월 합숙교육기간 합계 : 813,888원 (= 토·일 합산 203,472원 × 4회) ※ 6월 3주 합숙교육기간의 경우, 숙식 제공으로 정액급식비 미지급
7월 (7.2 ~ 8)	일할계산액 = 월급액 / 역일수 × 1월 미만의 근무기간 (385,000원) (1,705,000원) (31일) (7일)
	※ 7월 1주 현장실습기간 숙식 미제공으로 정액급식비(130,000원) 지급 ☞ 시도에서는 7월 월급액의 잔여액인 1,265,000원 지급 (23일분)

**3) 경력직 교육기간 급여 지급액 : 482,740원(소방청 지급)**

\* 교육기간 : 7. 2 ~ 7. 6. (1주 / 5일 합숙교육)

7월 (7.2~6)	일할계산액 (482,740원)	=	월급여 (2,993,000원)	/	역일수 (31일)	×	1월 미만의 근무기간 (5일)
5일	※ 합숙교육기간, 숙식 제공으로 정액급식비 미지급 (1일 96,548원)						

\* 시도 지급 7월 급여 : **2,518,550원**

7월 (7.7 ~ 31)	일할계산액 (2,518,550원)	=	월급여 (3,123,000원)	/	역일수 (31일)	×	1월 미만의 근무기간 (25일)
25일	※ 기본급(2,993,000원) + 정액급식비(130,000원) 지급						

\* 경력직 7월 수령액 : **3,001,290원**

**4) 행정보조인력 교육기간 급여 지급액 : 304,830원(소방청 지급)**

\* 교육기간 : 7. 2 ~ 7. 6. (1주 / 5일 합숙교육)

7월 (7.2~6)	일할계산액 (254,030원)	=	월급여 (1,575,000원)	/	역일수 (31일)	×	1월 미만의 근무기간 (5일)
5일	※ 합숙교육기간, 숙식 제공으로 정액급식비 미지급 (1일 50,806원)						

※ 5일 근무기간 적용 시 월 최저임금(**1,573,770원**)에 미달되므로 **6일분(304,830원)** 지급

\* 시도 지급 7월 급여 : **1,375,000원**

7월 (7.7 ~ 31)	일할계산액 (1,375,000원)	=	월급여 (1,705,000원)	/	역일수 (31일)	×	1월 미만의 근무기간 (25일)
25일	※ 기본급(1,575,000원) + 정액급식비(130,000원) 지급						

\* 행정보조인력 7월 수령액 : **1,679,830원**

○ **지급액 삭감**

- 무단 결근, 교육불참 등의 경우는 일급 기준으로 삭감

\* 1개월 경과 후에는 1개월 근무 시마다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 활용

- 예비군 훈련 참석 등 공가의 경우는 급여 미삭감

○ **급여지급 시기 : 시도의 급여지급 시기에 맞춰 지급**

\* 교육시 급여는 교육종료 후 1주일 이내 지급

○ **급여공제 :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가 공제함이 원칙**

○ **4대 보험 가입 : 시도에서 교육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도 교육개시일 부터 가입(보험가입비는 지방비로 편성)**